

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0. 14 (김종천 의원등 4명)

나. 회부일자 : 2008. 10. 21

다. 상정일자

⇒ 제46회 포천시의회(임시회) 행정자치위원회(2008. 10. 27)

▷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종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⇒ 『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』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, 정부의 『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839호)』에 의거 띄어쓰기등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1)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실제 개편에 따라 나의 “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 을 “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한다.
(안 제3조제2항)
- 2)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실제 개편에 따라 가의 “주민생활 지원국” 을 “총무국” , 나의 “기획감사담당관” 을 “경제생활지

원국” , 다의 “공보관광담당관” 을 “기획공보감사담당관” 으로 한다. (안 제3조제2항)

- 3)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사항중 마의 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“를 ” 포천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 “로 한다. (안 제3조제2항)
- 4)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실제 개편에 따라 가항의 “경제농 정국” 을 “건설도시국” , 나항의 “건설도시국” 을 “인허가담당 관” 으로 하고, 마항을 추가하여 그 내용은 “전략산업추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한다. (안 제3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봉춘)

가. 본 안건은 2008년 10월 1일 「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가 전부개정 되어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서 “의회사무국” 을 “의회사무과” 로 직 제를 정비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 를 분류 지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사항 : 없음